



# 영동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대법원 2004두 12629)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 부령 및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공통사항	소송 관련	◦ 소송 관련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제47조
	민원사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내용 및 민원 신상정보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기획감사관	감사사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에 속하는 자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7조
	공직재산 등록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금융자료 거래	「공직자윤리법」제14조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
행정과	공무원징계	◦ 징계위원회의 회의 ◦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 11조, 제12조
	지방공무원 평정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 ◦ 근무성적평정서·평정표, 서열명부 ◦ 승진후보자 명부 ◦ 다면평가 자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1조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2항
국악문화체육과	국악단 정기평정 결과	◦ 난계국악단 정기평정 결과 점수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운영조례제72조의2 제5항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주민복지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긴급복지일반	◦ 긴급지원 대상자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3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9조
가족행복과	보호여성 상담	◦ 가정·성폭력 피해자 상담 보호 치료 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민원과	가족관계등록	◦ 제적관련 공부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42조
	본인서명 사실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재무과	지방세 부과 및 조정	◦ 지방세 부과나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제132조
도시건축과 농촌신활력과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심의종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30일 경과 후라도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름·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보건소	에이즈 관리	◦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
	감염병 등 환자명부 관리	◦ 환자 진료 (일반, 한방, 임상별리검사, 물리치료, 방사선, 재활 등) ◦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관리 ◦ 감염병 환자명부관리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의료법 제19조)
	치매예방관리 사업	◦ 사업대상자 인적사항 등	치매관리법 제19조
	정신보건사업	◦ 사업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정신보건법 제71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 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공통사항	을지연습, 충무계획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비상계획에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사건메세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등 (단,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 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li> </ul>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비밀보안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li> <li>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li> <li>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 시설 현황</li> </ul>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있음
행정과	정보보안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업무 세부추진계획</li> <li>정보보호 시스템 관련자료</li> <li>보안성 검토 및 정보 보안진단 결과</li> </ul>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보호에 지장 초래
	보안시스템 운영에 관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화벽, 암호화장비 등의 보안정책, 접속로그 및 운영 관련자료</li> </ul>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서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버, 단말기 현황</li> <li>웹페이지 소스, DB구성도 등 제작 결과</li> </ul>	
민원과	공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공간정보 (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도 등)</li> </ul>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유지에 지장 초래
안전관리과	정보통신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P 및 전산장비 관리대장</li> <li>정보통신망 구성도</li> <li>정보통신 시설 보안관리</li> </ul>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방위교육 및 경보시설 운영 관리</li> <li>인력동원 계획수립, 인력동원 자원관리</li> <li>주민신고망 조직관리, 주민신고 등에 관한 사항</li> <li>중점관리 자원 관련 정보, 대상자 명부</li> <li>중점관리업체 및 자원 변동사항 관리</li> </ul>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주민복지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관련 업무	◦ 개인별 융자금 및 체납 관련 자료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재산 및 소득 정보 보호
	부정수급자 재조사 관련	◦ 부정수급자 신고민원인에 대한 인적사항 ◦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신고민원 공개시 본인 및 그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
가족행복과	한부모가정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정보 및 지급내역	개인의 재산 및 소득 정보 보호
	가정·성폭력 방지법에 의한 사업	◦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자에 대한 정보	
민원과	지적사무	◦ 지적측량성과 자료 및 측량결과도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인감 관리	◦ 인감대장, 발급대장, 인감전산자료, 인감관련 각종 신고서 등 인감업무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위·변조되어 범죄 목적 등에 사용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재무과	세무조사	◦ 납세자(개인/법인) 과세정보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 초래
	개인재산 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에 관한 정보	
안전관리과	CCTV관제센터 전산장비 관리	◦ CCTV 통합관제실 내부 서버, 장비등의 배치도 및 현황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	◦ 전체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 증권" 내역 중 증권번호 등	재산의 보호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공 통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및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각종 행정처분관련 고발장에 관한 정보	◦ 각종 행정처분(고발, 과태료 등)과 관련된 고발장, 사전통보 등에 관한 정보	
기획감사관	소송정보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자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공정한 심리 보장
재무과	지방세 구제 및 행정소송	◦ 납세자 구제 및 소송 진행사항 등에 관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및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민원과	공유재산소송	◦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건설교통과	교통행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관련 피의자 수사자료 등 검찰송치 자료	수사 진행중에 공개되면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무단방치차량 처리	◦ 사건수사관계 서류	
	무보험 운전자 송치	◦ 진행, 수사중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처리 제반사항	
농정과	농지전용 관련	◦ 농지법 위반자 사건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산림과	산림불법행위사법처리	◦ 산림관계법 위반자 사건 관련 정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산림사법 관련	◦ 산림사법 수사, 재판, 불법예방 등 관련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안전과리과	특별사법수사	◦ 특별법 위반자의 수사사건의 기밀엄수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비밀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공통사항	위원회 관련 (회의록)	◦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위원별 발언내용, 위원회 관련 평가표 등 (인사위원회, 공적심사, 군민대상심사, 정보공개심의회, 농업소득조사위원회 등)	회의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
	입찰 관련 정보	◦ 입찰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 ◦ 입찰 유자격자 명부 ◦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 입찰참가 개인·법인·단체 정보	공정한 계약업무 지장초래
	공사 관련 감사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기획감사관	법무일반관리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예산안 심사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예산확정 이전에 공개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 군정조정 관련 업무	군정의 중요정책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론 및 의견 개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영동군 의정비심의 위원회	◦ 계획 및 심의 관련 정보 ◦ 위원 의사결과 자광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영동 재정투자심사 위원회		
	규제개혁	◦ 규제개혁 추진, 평가, 과제 등 관련 정보	
행정과	조직관리	◦ 부서별·개인별 업무진단 사항 ◦ 비정규직 무기전환에 관한 사항 ◦ 조직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시험관리	◦ 각종 시험응시자, 합격자 인적사항 및 성적	
	공무원보수및수당, 호봉관리	◦ 공무원 연봉, 수당 및 호봉에 관한 정보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관련 서류 ◦ 공무원 임용 관련 자료 ◦ 징계처분 내용 ◦ 퇴·휴직 관련 자료 ◦ 인사교류 신청 ◦ 공무원 충원계획 ◦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관련 서류	
	공무원노조관리	◦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 요구서 등	
행정과 (해당부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 채용심사서(점수, 심사관, 순위 등) 등 채용 및 합격자 결정 과정 중 채용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채용과정의 공정한 관리 저해
재무과 (해당부서)	입찰·계약	◦ 입찰참가 절차, 결과 관련 문서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 입찰예정자의 경영 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 ◦ 예정가격 관련문서 -예정가격조서, 예정가격이 추측 될 수 있는 사양서,설계서, 부동산 감정평가, 계산 단가 등 ◦ 체결과정, 결과 관련 문서 -설계,시공의 창의적 고안·노하우 등의 정보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 -용지취득 등의 교섭 방침, 교섭상황 또는 예정지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내부검토 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환경과	환경관련 업무 지도 단속관리	◦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등 환경 관련 지도단속 계획 및 점검자료	내부검토과정 정보
안전관리과	하천 편입토지 보상	◦ 보상협의 관련서류 ◦ 하천 구역내 사유토지 조서 등	"
	폐천부지 매각	◦ 폐천부지 불하(하천 점용지)	"
도시건축과	군관리계획	◦ 군관리계획 심의사항	"
	군계획위원회 자료	◦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
	주택건설 사업 승인	◦ 사업승인 설계도서(부분도면 제외) ◦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민원업 무 처리	◦ 부서별 의견조회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산림과	사방사업(사방댐), 임도신설	◦ 설계내역 검토 등 입찰정보 설계도서 ◦ 기술자문단 타당성 평가 내역	내부검토과정 정보
	조림사업	◦ 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 개인별 보조 및 투자내역	"
농정과	농림사업일반, 소득임산물생산기반 조성	◦ 보조사업 심사내역 ◦ 개인별 보조 및 투자내역 ◦ 사업자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공통사항	민원의 개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li> <li>◦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 정보</li> <li>◦ 각종 신고·고발·신청 등의 개인정보</li> <li>◦ 면허·등록·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 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li> <li>◦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li> </ul>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각종 인허가·등록 신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관련 인적사항</li> <li>◦ 신원조회 및 행정처분 사항</li> </ul>	
	포상(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 요약서 등 포상관련 자료</li> <li>◦ 민간인 표창상신 및 추천서 개인 정보</li> </ul>	개인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과태료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과태료 부과(체납) 관련 정보</li> <li>◦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이의신청, 체납 독촉 등(개별법령에서 고액체납자 등 공개 규정시 예외)</li> </ul>	개인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기획감사관	공무원 범죄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 결과</li> </ul>	공무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청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대상 민원인의 인적사항, 처분내용,</li> </ul>	개인사생활의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위반사항 -공직부패 및 청렴도 -공직자 선물 신고 접수 -공직자재산등록심사 및 공개관리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운영	비밀침해 우려
행정과	급여	◦ 직원 급여 압류 관련 자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우려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 보수명세서 ◦ 임용관련 신원조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업무	◦ 종합건강진단 수검자 현황 ◦ 국고대여장학금 대부공무원 현황 ◦ 유족보상금 청구 현황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포상(상훈)	◦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 기록요약서, 포상대장	개인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징계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 징계회의록, 의결서 ◦ 징계대장	공무원의명예·신용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시험관리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시험위원·면접위원·시험관리관 등 시험 관련 위원의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사이버운영 관리 및 정보화	◦ 부서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참가자 인적 사항 개인정보	
	이반장관리, 선거관리일반	◦ 이장자녀 장학금, 이반장 포상 관련 정보 ◦ 읍면위원회 및 투표관리관 등	
행정과 (해당부서)	단체회원 등 명단관리	◦ 단체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국악문화 체육과	문화재매매업, 관광사업, 유통업, 공연장, 출판사, 인쇄사,, 체육시설업	◦ 등록·변경 신고에 따른 신고서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휴대 전화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보훈단체 회원 관리	◦ 회원 명부의 인적사항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 사례관리 대상자의 인적사항	
	공동모금회 및 기타 이웃돕기	◦ 공동모금회 주관 이웃돕기 업무 및 기타성품 등 배부업무 등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	◦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긴급복지 대상자 관리 선정결과	◦ 긴급복지대상자관리 선정결과	
	기초연금	◦ 기초연금 신청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장기요양보험	◦ 기관설치신고 및 변경사항, 이용자 신청내역	
	장애인복지	◦ 장애활동보조사업,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 등록장애인 명단등 개인인적사항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이용 대상자의 인적사항	
	개장신고	◦ 신고인 인적사항	
	의료급여	◦ 선택 병의원 내역 ◦ 입원동의서 발급내역 ◦ 요양인, 장애인 보장구 지급내역 ◦ 대불금, 구상금, 부당이득금 등 ◦ 의료급여 체납관련고지, 압류, 조회 등 ◦ 수급자 급여일수 및 진료내역, 재발급신청관련자료, 연장승인내역 ◦ 의료급여대상자 인적사항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보장결정	◦ 생활실태조사내용, 개인인적사항	
	자활사업	◦ 가사간병방문도우미등서비스 참여자·수혜자의 서비스 신청서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명단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에 포함된 개인 인적사항 ◦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개인 인적사항	
가족행복과	식품위생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적발보고서 및 의견진술서 등 관계사건송치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가정양육수당지원, 영유아보장결정,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급내역 ◦ 양육 및 보육지원 대상자 보장결정 및 지원 사항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인적사항	
	입양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요보호아동지원	◦ 입양아동 인적 사항 및 개인정보 ◦ 가정위탁아동 인적 사항 및 개인정보 ◦ 각종 아동지원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인적 사항 및 수당 지급내역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아동급식지원, 아동발달계좌지원, 아동복지교사지원	◦ 아동복지시설 입퇴소아동 인적 사항 ◦ 아동급식대상자 인적 사항 및 개인정보 ◦ 대상자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여성인명록 관리	◦ 인명록의 개인 인적사항	
	차세대 여성 지도자 교육운영	◦ 여성 지도자 교육관련 개인 인적사항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 다문화가정 대상자 인적사항	
	그룹 홈 입소 아동관리	◦ 그룹 홈 입소아동 인적사항	
	평생교육 수강생 및 등록 강사 회원관리	◦ 평생교육과 프로그램 수료 및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개인정보, 강사등록을 위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필요한 개인정보	
	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 관련서류	
	자격증 발급대장	미용, 이용, 조리사, 감시원증 발급	
민원과	재산관리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자료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민원관련 업무	◦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관련 개인정보 ◦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의 개인정보	
	여권업무	◦ 여권소지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주민등록조회	◦ 주민등록자료 전체	
	영동군전입세대지원	◦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부동산 실거래	◦ 개인의 부동산 거래내용 ◦ 부동산 거래 소명자료, 부동산실거래 위반과태료 부과자료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정보	
	부동산실명제 관리	◦ 납세자 제출자료, 과태료부과징수자료, 과태료 부과결정 내부검토자료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사생활침해정보	
	조상땅 찾아주기	◦ 토지자료 이용신청서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 정보	
	부동산등기신청 지연과태료 부과징수	◦ 납세자 제출자료, 과태료부과징수자료, 과태료 부과결정 내부검토자료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사생활침해정보	
	토지거래	◦ 토지거래계약허가서	
	지적재조사	◦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 및 통보	◦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공유재산대부계약, 공유재산처분, 공유재산사용허가및대부	◦ 대부자명단 ◦ 계약자명단		
민원과 (해당부서)	국, 공유재산 관리	◦ 국, 공유재산 매각대부, 사용허가, 변상금 등 관련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재무과	세외수입환급관리, 지방세환급관리	◦ 환급대상자명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세외수입 관리	◦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 자료	
	지방세 부과 및 조정	◦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개인정보 ◦ 지방세 이의신청 및 결정사항 ◦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및 결정사항 ◦ 지방세법칙 사건처리 ◦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 자료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 지방세 체납결손처분 사항	
	세무조사 및 관리	◦ 납세자의 과세정보	
	체납 정보	◦ 체납자 또는 결손자 과세정보	
	공무원 급여·수당	◦ 개인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 개별 공무원 급여압류 등에 관한 정보	
경제과	에너지 관련 업무 신청자 정보	◦ 가스일반, 고압가스인허가, 도시가스, 석유판매업민원처리 및 행정처분, 석유 판매업일반, 액화석유가스허가 ◦ 신재생에너지일반, 안전관리자선해임 ◦ 전기공사업일반, 전기공사업처분 및 결격 사유조회등, 전기안전관리부적합관리, 전기일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일자리사업 추진 (자료입력, 조회 등)	◦ 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근로자 및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일자리사업 선발순위 명부	일자리사업 선발여부에 따른 담당공무원보호 및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환경과	환경관리법 위반	◦ 적발보고서 및 의견진술서 등 관계사건송치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환경개선부담금	◦ 부과대상자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수렵면허 관리	◦ 수렵면허 소지자 등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연락처)	
	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통보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허가 통보상의 개인정보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필증(민원인의 인적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준공·폐쇄 신고 통보상의 개인정보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 및 독촉 보고상의 개인정보	
환경미화원관리	◦ 신규채용에 관련한 자료 ◦ 채용관련 신원조회 기록 ◦ 개인별 인사기록		
산림과	산지전용허가, 신고, 사용허가 등	◦ 허가자의 인적사항 및 허가관련 서류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일자리창출사업	◦ 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 개인별 보조 및 투자금액 ◦ 인부 등 참가자 인적사항	
	조림사업	◦ 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 개인별 보조내역 및 투자금액	
	산림병해충 방제	◦ 소나무재선충 감염여부확인 의뢰자의 개인정보 자료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건설교통과	특별사법경찰 관리 업무	◦ 송치, 조서, 범죄보고서, 전화조회 등 관련 서류 중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무보험운행방치 차량사법처리	◦ 통고처분 및 검찰사건 송치(이첩) 출석요구 및 범죄경력 조회	
	방치차량 관련	◦ 방치차량의 행정처분사항 및 관련 개인정보	
	자동차관리	◦ 이륜차, 화물차 등의 차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택시, 마을버스 등의 차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압류 관련 개인정보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등록, 갱신, 말소관련서류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인적사항	
	보상업무	◦ 손실보상열람및협의개별통지 ◦ 손실보상금 지급의뢰 ◦ 재결신청 및 공탁신청	
안전관리과	민방위인력동원업무, 민방위기술지원대편성및 운영, 민방위대편성계획수립	◦ 민방위 인력동원 현황 ◦ 민방위 기술지원대 현황 ◦ 민방위대편성 현황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사회복무요원운영관리,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 정비사업	◦ 사회복무요원 현황 ◦ 재난취약가구 명단 및 현황	
	하천정비사업 등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관리	◦ 타인의 토지수용재결 과년정보 (재결서, 감정평가서)	
도시건축과	주택재개발, 재건축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 승인 신청(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임원 및 위원 등 선정 증명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중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 관련사항 등 개인인적사항 ◦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조합원 및 분양 대상자조서, 소유자별 권리명의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 내 보상관련 정보 중 제3자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사업계획(변경)승인, 준공관련 서류 중 개인정보 ◦ 주택건설계획 승인에 따른 동의서 등 서류 중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위반건축물 관리	◦ 철거 및 시정촉구 명령 개인신상 관련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자 관리	◦ 사업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등)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 사업자 개인별 보유 현황 (사업자별 소유 임대주택 주소 및 등록 건수)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련자료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 결핵환자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영양플러스사업	◦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자(영유아, 임산부) 및 대상자 등록관리 정보	
	치매상담센터운영	◦ 치매환자 등록관리 정보	
	의료법 위반	◦ 의료법등에 대한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고발, 진정사항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가족의 인적사항 및 재산관련 사항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 신청대상자의 인적사항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업무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의뢰 및 회신에 관한 사항,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기록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지원 관련 각종 의뢰에 관한 사항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대상자 인적사항		

## 7 업체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 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공통사항	각종 단체·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구성 등 인사 관련 자료</li> <li>◦ 정관 및 기본재산 현황 등</li> </ul>	법인의 이익보호
	인·허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li> </ul>	경영·영업상 비밀보호
국악문화체육과	관광사업계획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 상의 인적사항 및 업체 소유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li> </ul>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행정과	정보시스템개편·구축·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li> </ul>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관리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li> </ul>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
	법인 등 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 장애인시설 등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가족행복과	법인 등 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보육 법인 등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
재무과	입찰계약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li> </ul>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세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조사 내부계획, 법인선정 조사결과 타시군구 조사통보분내역</li> </ul>	법인의 공정한 조사를 저해할 우려
경제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 용자승인 현황</li> </ul>	
	투자유치 추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해각서 및 계약서, 상담내용</li> <li>◦ 투자유치 정보수집 자료</li> <li>◦ 잠재투자자 관리 등</li> </ul>	
보건소	전염병 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독의무대상시설중 소독미 실시 업소 현황</li> </ul>	개인(법인)의 정당한 이익 저해

##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공통	토지수용 관련	토지수용 운영 및 공공용지 보상실적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우려
건설교통과	공영주차장 건설	◦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매도 관련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보상업무	◦ 손실보상협의 개별통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뢰, 재결 신청, 공탁신청	편입토지에 대해서 산정된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도로공사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안전관리과	하천관리	◦ 하천 기본계획 고시 심의자료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	◦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절차를 이행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료	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도시계획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수립)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입안 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관한 자료 일체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9. 기타 비공개 사항

### ■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과 공개거부(법 제9조 제1항)

-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의 취급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정행정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라든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행하여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처리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실정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권리남용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적용하여 비공개로 처리함이 적절할 것임(법 제9조 제1항 관련)

- 정보제공을 위해 과도한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

청구인이 9,029매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정보공개에 공무원의 과도한 노력을 요구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고 공개될 실익은 없는 것이 됨(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판결)

※ 참고 : 권리의 남용금지 는 모든 법 영역에서 타당한 법의 일반원칙임  
(민법 제2조 제2항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 부분공개에 있어서 의미 없는 잔존정보의 공개거부(법 제14조, 법 제9조 제1항)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공개가능 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청구대상이 된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별하여 전자를 공개하여야 함
-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음

-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 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문자, 숫자로만으로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 정보자체의 존부에 관한 정보공개가 문제되는 경우(법 제9조 제1항)

- 정보자체의 존부자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공개 처분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음.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청구대상문서가 존재할 경우에,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결정을 하고,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결정을 함. 비공개결정의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하여야 함
- 청구대상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를 이유로 제시하여 거부처분하게 됨.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개청구에 관련된 정보의 존부자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의하여 비공개정보규정에 의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정보자체의 존부자체를 답하는 것에 의한 비공개정보규정의 보호이익의 손상가능성은 이론적으로 모든 비공개정보에 대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존부응답거부를 하는 경우에 중요한 것은 존부응답거부가 필요한 유형의 문서에 대하여 실제로 문서가 존재하는 가를 묻지 않고 항상 존부응답을 하여야 할 것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로 답하고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존부응답거부를 한다면, 존부응답거부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존부응답거부에 관련된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청구자에게 추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임
- 정보의 존부에 관한 응답거부는 처분성을 갖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의 불복절차와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9조)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표 ]

번호	비공개 대상정보	판 단 기 준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 규정 실질적으로도 보호가치 있음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함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유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회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유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유소멸 시 공개대상임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p>&lt; 예외적으로 공개가능 정보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 등 공부 등으로 규정에 따라 열람가능한 정보</li> <li>2.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취득한 정보</li> <li>3.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li> <li>4. 직무 수행 공무원의 성명 직위</li> <li>5. 자격증 필요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여부</li> <li>6.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법령에 의해 공무의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li> </ol>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p>&lt; 예외적으로 공개가능 정보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li> <li>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li> </ol>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지만 하면 별도의 형량없이 비공개 가능